

HS 효성첨단소재(주) 협력업체 행동지침

HS 효성첨단소재(주)는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기업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협력회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, 협력회사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HS 효성첨단소재(주) 협력업체 행동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함)을 제정하였습니다.

본 지침을 통해 HS 효성첨단소재(주)(이하 “HS 효성첨단소재”라 함)는 협력업체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, HS 효성첨단소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 및 하위 협력사에 윤리적 기업 운영,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존중,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, 그리고 환경경영에 대한 책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.

본 지침은 UN 총회에서 채택 된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을 비롯하여 UNGC 10 대 원칙,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, OECD 가이드 라인 등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, 본 지침과 현지 법규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 됩니다.

윤리 및 공정거래 :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적극적인 윤리경영 동참을 요청합니다.

- ① 반부패 :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업무와 관련 된 모든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, 선물, 편의 등의 대가를 직·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, 부당한 요구 금지
- ② 공정거래와 경쟁 : 입찰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경쟁에 관한 규제와 기준을 준수하며, 불공정 행위 시 거래중단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
- ③ 고객만족 :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
- ④ 이해관계 상충 : 개인과 비즈니스 간 이해 상충 관련 또는 초래 될 수 있는 계약 사전 방지
- ⑤ 지적재산권 보호 : 협력회사는 HS 효성첨단소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, 하위 협력회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
- ⑥ 개인정보 보호 : 협력회사, 임직원,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를 보호
- ⑦ 제보 익명성과 보복금지 :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보복의 두려움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
- ⑧ 분쟁광물 금지 :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모든 원자재 및 원료 사용 금지

인권 및 노동 :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수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

하며,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.

- ① 차별금지 : 인종, 언어, 종교, 민족, 장애, 정치,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
- ② 강제노동 금지 : 협력회사는 직, 간접적인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하위 공급업체들을 공급망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
- ③ 아동노동 금지 : 협력회사는 어떠한 제조 과정에서도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아동노동을 통한 이익을 얻는 하위 공급업체들을 공급망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
- ④ 직장 내 괴롭힘 방지 : 성희롱, 정신적·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비인도적 행위 금지
- ⑤ 공정한 보상 : 공정한 근로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제공
- ⑥ 노동환경 개선 : 현지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정기적 유급휴가를 제공
- ⑦ 집회 및 결사의 자유 :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 보장
- ⑧ 재산권 보호 : 협력회사는 HS 효성첨단소재와 2 차 협력회사의 모든 지적·물적재산권을 존중
- ⑨ 사생활 보호 :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, 주택, 통신 등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간섭 금지

안전 및 보건 :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합니다.

- ① 근무환경 개선 :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
- ② 비상사태 대비 : 비상사태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대피훈련을 통한 효과적 대피능력 제고
- ③ 산업재해 예방 :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력
- ④ 위생 관리 : 근로자가 사용하는 화장실, 식수, 기숙사는 위생적으로 관리
- ⑤ 안전보건 교육 :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제공
- ⑥ 유해인자 노출 방지 :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, 생물학적, 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통제
- ⑦ 설비 안전 관리 : 위험설비의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
- ⑧ 안전 사고 관리 :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

환경 : 제공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고,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- ① 환경법규 준수 : 법정 필수 인허가 취득은 물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준수
- ② 환경영향 저감 :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
- ③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관리 :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거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
- ④ 대기오염 관리 :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방지시설 모니터링

- ⑤ 물 관리 :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치 내 배출 모니터링
- ⑥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감축 :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검증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립·이행
- ⑦ 제품 전과정 평가 관리 :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과정인 원료 채취 단계, 가공, 조립(생산), 수송, 사용, 폐기의 모든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 및 수계, 토양으로의 환경 부하량을 정량화하고 제공.
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규명, 환경 부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
- ⑧ 폐기물 관리 :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

본 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 될 수 있으며, 개정 된 사항은 HS 효성첨단소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. 또한 HS 효성첨단소재 또는 HS 효성첨단소재의 제 3 자 평가 기관은 본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 및 현장 방문 및 실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가 발견 될 경우,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일 본 지침에 대한 중대 위반 사항이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HS 효성첨단소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